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22
----------	-------

발의연월일 : 2025. 12. 3.

발 의 자 : 윤종오 · 전종덕 · 정혜경
손 술 · 황운하 · 김재원
김준혁 · 임미애 · 위성곤
용혜인 · 박수현 · 한창민
허성무 · 최혁진 · 정춘생
서영교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국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예외적으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강제퇴거명령의 경우에는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되어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게 됨. 관련된 해외의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강제퇴거보다는 대상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자진출국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아동, 아동을 동반한 가족, 장애인, 임산부, 난민 등에 대한 강제퇴거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이유에서 강제퇴거명령 위주의 출입국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에 대한 퇴거체계를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에서 ‘자진

출국 우선주의'로 전환하여 출국대상 외국인의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함으로써, 출입국관리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장제1절부터 제5절까지).

한편, 현행법은 출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인신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내지는 '긴급보호' 제도를 두고 있는데, 많은 경우 보호의 필요성 및 긴급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내지는 '긴급보호'가 내려지는 등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 임산부에 대해서도 이처럼 행정조사 과정에서 인신구속되는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어서, 다수의 아동이나, 장애인, 임산부가 인신구속을 겪게 되는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할 때에는 인신구속(보호)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신구속(보호) 여부의 판단 시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출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 등).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목 “강제퇴거 등”을 “출국명령 등”으로 한다.

제6장제1절(제46조 및 제46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자진출국의 원칙

제46조(자진출국의 원칙) ① 출국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대신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국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 및 그 보호자
2. 장애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자와 그 보호자
3. 임신 중이거나 출산 또는 유산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난민법」 제3조에 따라 강제송환이 불가능한 자
5.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로 인하여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6조의2(자진출국에 대한 지원 등) ① 법무부장관은 귀국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46조의3제4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유예한 사람에 대하여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46조의2 다음의 “제2절 조사”를 “제3절 조사”로 한다.

제6장에 제2절(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출국명령 등

제46조의3(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

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국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幫助)한 사람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명령 통지일부터 14일 이상의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해당 외국인의 출국 가능성, 출신국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출국기한으로 정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출국명령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출국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출국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1. 소송 등의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난민심사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수소 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4. 기타 인도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제46조의4(출국권고)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1. 제17조와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권고를 받은 외국인이 1개월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국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46조의5(강제퇴거명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려야 한다.

1.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에 위반한 경우

3. 강제퇴거명령을 내리지 아니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출국을 강제로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제46조의6(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진출국 사유, 제46조의4에 따른 출국권고 사유, 제46조의5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사유를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용의자를 보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용의자의 보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 및 그 보호자
2. 장애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자와 그 보호자
3. 임신 중이거나 출산 또는 유산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난민법」 제3조에 따라 강제송환이 불가능한 자
5.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로 인하여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50조 다음의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를 “제4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로 한다.

제57조 다음의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을 “제5절 심사 및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58조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을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4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진출국 사유, 제46조의4에 따른 출국권고 사유, 제46조의5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사유의 해당 여부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의3제1항”으로,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를 “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제퇴거명령을”을 “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 강제퇴거명령을”로, “강제퇴거명령서를”을 “해당 처분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강제퇴거명령서를”을 “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 강제퇴거명령의 처분서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강제퇴거명령에”를 “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 강제퇴

거명령에”로, “강제퇴거명령서를”을 “해당 처분서를”로 한다.

제61조 다음의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제6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한다.

제64조 다음의 “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를 “제7절 보호의 일시해제”로 한다.

제66조의2 다음의 “제6절의2 의견진술”을 “제7절의2 의견진술”로 한다.

제66조의3 다음의 “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제7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로 한다.

제66조의17 다음의 “제7절 출국권고 등”을 “제8절 출국권고 등”으로 한다.

제67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국명령, 출국권고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6장 강제퇴거 등</u> <u>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u> <u>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u> <u>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u> <u>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u> <u>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u> <u>1. 제7조를 위반한 사람</u> <u>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u> <u>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u> <u>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u> <u>국인</u> <u>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u> <u>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u> <u>나 발생한 사람</u> <u>4. 제12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u> <u>12조의3을 위반한 사람</u> <u>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u> <u>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불</u> <u>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u> <u>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u>	<u>제6장 출국명령 등</u> <u>제1절 자진출국의 원칙</u> <u>제46조(자진출국의 원칙) ① 출국</u> <u>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해</u> <u>서는 원칙적으로 강제력을 행</u> <u>사하는 대신 자진하여 출국할</u> <u>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u>② 출국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u> <u>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u> <u>여부를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u> <u>다.</u> <u>1. 미성년자 및 그 보호자</u> <u>2. 장애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u> <u>거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u> <u>나 부상이 있는 자와 그 보</u> <u>호자</u> <u>3. 임신 중이거나 출산 또는 유</u> <u>산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u> <u>니한 자</u> <u>4. 「난민법」 제3조에 따라 강</u> <u>제송환이 불가능한 자</u> <u>5.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로 인</u> <u>하여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u>

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

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

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

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

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

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

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
唆) 또는 방조(幫助)한 사람
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
한 특칙)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
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
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
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
증인의 지정 등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
시해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46조의2(자진출국에 대한 지원
등) ① 법무부장관은 귀국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외국인의 자
진출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46조의3제4
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유예한
사람에 대하여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2절 출국명령 등

제46조의3(출국명령) ① 지방출입
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
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
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
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
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
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불
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
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
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
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
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
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
리공무원이 불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 · 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 · 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 · 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
-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국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幫助)한 사람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명령 통지일부터 14일 이상의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해당 외국인의 출국 가능성, 출신국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출국기한으로 정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출국명령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출국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출국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1. 소송 등의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난민심사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수소 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4. 기타 인도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신 설>

제46조의4(출국권고) ① 지방출입

<신 설>

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1. 제17조와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무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권고를 받은 외국인이 1개월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국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46조의5(강제퇴거명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려야 한다.

1.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출국

<신 설>

제2절 조사

- 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
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에 위반한 경우
3. 강제퇴거명령을 내리지 아니
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 또
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출국
을 강제로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명백하게 인
정되는 경우

제46조의6(강제퇴거집행 등에 대
한 특칙)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
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
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
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다.

제3절 조사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제47조(조사) ① -----

----제46조의3제1항-----

----- . 이 경우 출입국 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진출국 사유, 제46조의4에 따른 출국권고 사유, 제46조의5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사유를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용의자를 보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용의자의 보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 및 그 보호자

2. 장애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나 부상이 있는 자와 그 보호자

3. 임신 중이거나 출산 또는 유산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

<u>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u> <u>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u> 제58조(심사결정)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u>하나</u>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9조(심사 후의 절차) ① (생략)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u>제46조제1항</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니한 자</u> 4. 「난민법」 제3조에 따라 강 <u>제송환이 불가능한 자</u> 5.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로 인 <u>하여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u> <u>자</u>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u>는 사람</u> <u>제4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u> <u>제5절 심사 및 이의신청</u> 제58조(심사결정) ----- ----- ----- -----<u>하나에</u> <u>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46조제2</u> <u>항 각 호에 따른 자진출국 사</u> <u>유, 제46조의4에 따른 출국권고</u> <u>사유, 제46조의5에 따른 강제퇴</u> <u>거명령 사유의 해당 여부를---</u> -----. 제59조(심사 후의 절차) ① (현행 과 같음) ② ----- -----<u>제46</u> <u>조의3제1항</u>-----
---	--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용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0조(이의신청) ① 용의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

제6절의2 의견진술

-----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 강제퇴거명령을-----해당 처분서를-----.

④ -----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 강제퇴거명령의 처분서를-----.

제60조(이의신청) ① -----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 강제퇴거명령에-----해당 처분서를-----.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7절 보호의 일시해제

제7절의2 의견진술

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제7절 출국권고 등

제67조(출국권고) ①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7조와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무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권고를 할 때에는 출국권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국권고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날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

제7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제8절 출국권고 등

<삭 제>

<삭 제>

· 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2.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3의2.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다만,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通告處分)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